

# 대법원 2017도17838

## 국회의원 박OO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8. 2. 8. 국회의원 박OO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부분에 대하여는, ① 금품 수수 당시 창당준비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성립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에 해당하고, ②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2) 불법 선거운동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공직선거법에서는 금지되어 있던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로 하는 선거운동'이 그 후 허용된다는 취지로 개정되었지만 개정법 부칙에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이 사건 행위는 박OO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3) 불법 선거비용 지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이 선거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7838 판결)

### 1. 사안의 내용

####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박OO[34~36대 전남도지사]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당 후보자로서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에서 당선된 사람임

- 피고인 박OO이 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김OO으로부터 신민당 창당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5,200만 원,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제공받고, ②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하고, ③ 선거비용 2,000만 원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

▣ 원심의 판단

- 모두 유죄로 판단함(피고인 박OO 징역 2년6개월, 추징 317,136,300원)

## 2. 대법원의 판단

### 가. 사건의 쟁점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부분

- ▶ 공직선거법상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에서 ‘정당’은 금품수수 당시 이미 성립되고 공천절차가 마련된 정당만을 의미하는지
- ▶ 피고인 박OO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 불법 선거운동 부분

- ▶ 이 사건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공직선거법상 금지되었던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이 그 후 허용되는 취지로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 행위가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 ▶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 불법 선거비용 지출 부분

- ▶ 이 사건 금원이 선거비용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알았는지

###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

### 다. 판단 근거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부분

- ▶ 공직선거법상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에서 ‘정당’은 금품

**수수 당시 이미 성립되고 공천절차가 마련된 정당만을 의미하는지 (소극)**

- ① 해당 조문의 문언 자체로 정치자금 기부받을 당시 반드시 특정 정당이 존재할 것과 그 정당의 구체적인 후보자 추천 절차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
- ② 해당 조문은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행위는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되었음(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 11040 판결 등 참조). 정당을 설립하기 위한 창당준비위원회가 장차 정당의 성립 이후 치러질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그 창당을 위한 활동과정에서 특정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는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직선거·정당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미칠 해악은 정당 성립 이후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
- ③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에서의 후보자 추천은 정당 소속 후보자인 경우에는 정당이, 정당의 당원이 아닌 경우에는 선거권자가 할 수 있는데(제47조, 제48조), 제47조의2 제1항은 선거권자가 아닌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와 관련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의 이익 등을 수수할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후보자 추천절차가 존재하는 정당’ 이라고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 결과 장차 성립될 정당 또는 아직 구체적인 후보자 추천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일’ 도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 피고인 박OO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적극) :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에 관하여 사실심인 제1심과 원심의 판단을 존중함

■ 불법 선거운동 부분

- ▶ 이 사건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공직선거법상 금지되었던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이 그 후 허용되는 취지로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 행위가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적극) : 개정법 시행 부칙에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음
- ▶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적극) : 문자메시지 발송 시간, 횟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위는 박OO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함

■ 불법 선거비용 지출 부분

- ▶ 이 사건 금원이 선거비용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알았는지 (적극) :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에 관하여 사실심인 제1심과 원심의 판단을 존중함

### 3. 판결의 의의

-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와 관련하여 해당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 결과 장차 성립될 정당 또는 아직 구체적인 후보자 추천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일’도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금품수수 당시 아직 정당이 성립하지는 않았더라도 창당준비 과정에서 장차 성립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 법 위반죄에 해당함
-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선거비용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출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각 관련자를 직접 신문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실인정을 한 사실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함